

대법원 2001두622	(2002.12.26)	조심 2011중1749	(2012.04.23)
대법원 2001다44109	(2003.05.16)	조심 2015전596	(2015.06.25)
대법원 2008두19635	(2010.10.28)	조심 2016서1700	(2016.07.07)
대법원 2012두27091	(2013.05.09)	조심 2018중199	(2018.09.19)
서울행법 2016구합73658	(2017.01.20)	조심 2017중4926	(2018.10.25)
서울고법 2017누35631	(2017.08.30)	심사소득2020-1	(2020.05.06)
대법원 2016두49525	(2019.06.27)	조심 2020부1593	(2020.09.15)
서울고법 2020누41377	(2021.04.08)		

대법원 2015두3270 (2017.01.25)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과세문제**

선우회계법인 주황규팀장
Web > <http://tax4041.co.kr/>
Daum cafe > <https://cafe.daum.net/transtax>

개정상법이란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 을 말합니다. ※ 개정된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의 자기주식의 취득 일반원칙은 여전히 유효
등 상법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4.15.부터 시행

자기주식 취득 [자본충실의 원칙(자본유지위협) 저해] - 배당가능이익범위 · 배당지급액 (보통예금)보유 여부 / 기본개념(대원칙/취득내용)

- ①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이익의 배당)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으로 정하는 방법 (주주평등의 원칙 침해) - 기본개념(대원칙/취득내용) · 불균등감자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취득시 상법 [형식] 절차) 위반시 소명 불가

상법

- ①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적 기초 저해) 상장회사 처럼 이월결산금 보전(재무구조개선) 하는게 아니라 비상장법인은 부채비율이 높아지며 추가하락 회사의 손해
- ②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 이익 침해) 투기행위의 위험
- ③ 채권자의 이익 침해

대표이사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상법요건 결여 원인무효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단서조항

- ① 당초 증여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여일~소각일)
- ② 이익소각 의제배당 취득가액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소각일) / 원천징수(15.4%) · 종합소득세 VS
- ① 원상회복 시 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증여일 ~ 지급액 원상회복시까지)

특수관계인 (주주의 구성)

비상장주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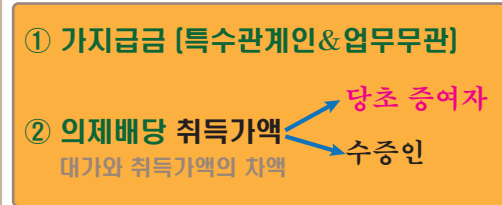
조세회피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형식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

세법

자금흐름	가지급금(F/S) 정리 상계	소명 불가
	당초 증여자 귀속 (금융흐름)	소명 불가
명의신탁 차명주식 잉여금처리	증여자 당초 주식 취득시 자금	소명 불가
	차명주식 해결	소명 불가
		내용 파악



공통

- ① 당사자의 의사(모든 주주) 취득자(수증인)의 목적 및 소각 주주 포기자의 의사(경위) “각 주주 자신의 재산권행사 및 타인(배우자 · 컨설팅 · 세무대리인)의 관여”
- ② 계약체결의 경위
- ③ 대금의 결정 방법
- ④ 거래의 경과 등
- ⑤ 거래의 전체 과정(형식만 보는데 아님)을 실질적(주금의 환급)으로 (개념)파악

당초 특정(일부)주주만 취득

취득목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거래)

업무무관 vs 업무관련

대금의 결정 방법

- 간주취득세
- 자기 주식 소각 후 다음 유상양수시 비율 증가시(증가율)
-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 VS 배당소득
- 회사와 양수도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출자의 환급(소각)은 배당소득임
-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출자의 환급이 아니라는 근거가 필요함